

2025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공모

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최근 5년 이내(2020 ~ 2024년), “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사업” 참여 이력이 있는 연수단원을 2025년도에 정규직으로 고용 전환 또는 신규 채용한 문화예술 단체를 대상으로 <2025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>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1. 사업목적

-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사업 참여 연수단원의 정규직 고용전환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문화예술 분야 고용환경 개선

2. 신청자격

- 신청대상 : 최근 5년 이내(2020 ~ 2024년) 민간 및 국·공립 예술단체에서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청년인력을, 정규직으로 고용 전환 또는 채용하여 2025년도 현재 대상자와 정규직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
 - 2025년 상반기(1~6월) 중 1개월 이상 해당인력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
 - <한국표준산업분류> 기준 ‘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’으로 분류되는 단체로, 지원심의회의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 활동 단체로 파악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

※ 신청 대상 예시

- 신청단체에서 2020 ~ 2024년에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전환하여 해당인력에게 1개월 이상의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있는 단체
- 신청단체가 아닌 타 단체에서 2020 ~ 2024년에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해당인력에게 1개월 이상의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있는 단체

※ 2년차 지원 : 2023년에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인력을 2024년도에 정규직으로 고용전환하여 1년차 지원받고 2025년도 현재 계속 고용하고 있는 단체

※ 유의사항

- 이전(2017 ~ 2024년)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사업의 수혜이력이 있는 인력을 <2025년 연수단원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> 대상인력으로 신청할 수 없음
- 신청단체 대표자와의 직계가족(배우자 포함), 친인척(4촌 이내 혈족)을 대상인력으로 신청할 수 없음
- 공공 및 민간 영역(문예기금, 국고, 지자체/지역문화재단 보조금, 기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재원 등)에서 현재 인건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대상인력으로 신청할 수 없음
-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안내 준수(지원신청 부적격자/부적격 사업, 행정심의 결정사유 등 확인 필수)

<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> 바로가기

3. 사업내용

- 지원분야 : 문학, 시각예술, 연극·뮤지컬, 무용, 음악, 전통예술, 문화일반(다원예술) 기초예술 전 분야

- 사업기간 : 2025년 7월 ~ 12월 (6개월)
- 지원내용 : 정규직 고용전환 인력에 대한 2025년 하반기 6개월분 임금(세전 기준)의 인건비 일부 지원

구분	지원조건	지원규모	지원액 산출근거
1년차	6개월 이상 정규직 고용 유지	당해년도 하반기 6개월간(7월~12월) 1인당 월 최대 120만원	지원인력 월 급여액의 50%
2년차	12개월 이상 정규직 고용 유지	당해년도 하반기 6개월간(7월~12월) 1인당 월 최대 60만원	지원인력 월 급여액의 25%

- * 단체별 지원액 산정 기준 :
고용 전환인력 인원수 X 월 임금액(세전) X 년차별 해당비율 (50%, 25%) X 6개월분
- * 선정단체의 지원신청액에서 만원단위 절사한 금액지원을 기본으로 하며, 지원신청액 기준으로 산출한 월 급여가 증빙된 급여명세서상의 실제 급여를 초과할 경우,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조정

- 2025년 지원예산 : 529,000,000원
- ※ 신청건수 및 신청규모, 지원심의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선정사업별 지원규모(지원 비율 및 상한액 등)는 조정될 수 있음

4. 지원심의

- 심의방법 : 서류심의
- 지원심의 기준

구분	심의기준	세부평가내용
적격여부 심사	근로기준법 준수 여부	· 법정 최저임금 준수 여부 ·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
	단체의 사업수행실적	· 최근 3년간(2022 ~ 2024년), 1회 이상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단체는 해당연도 모니터링 평가결과 반영 ※ 연도별 모니터링 평가결과 최저 등급 해당 시, 심의대상 제외
근로계약 사항	정규직 전환 여부(25%)	· 계약기간의 존재 여부 · 정규직의 법적 정의와 세부 계약조항 간 상충 여부 ※ 정규직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폭넓은 개념으로 정의
	보수 수준(25%)	· 근로시간 대비 지급 보수 수준
	근로계약의 구체성(10%)	· 근로계약서 내 세부조항의 명시 여부 및 구체성 · 근로일 및 근로시간, 휴가·휴게 및 연장근로 규정 등
	근무조건의 적정성(10%)	·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혜택 제공사항
예술인력 운영현황	인력 운영 (30%)	· 경력단계 대비 직무 설정 수준의 적절성 · 배치 직무의 중요도 및 경력개발 도움도

5. 신청기간 : 2025년 6월 2일(월) ~ 6월 23일(월) 18:00까지

6.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

- 신청방법 :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을 통한 온라인 접수(이메일, 우편, 직접 방문 접수 불가)

※ 신청 시 유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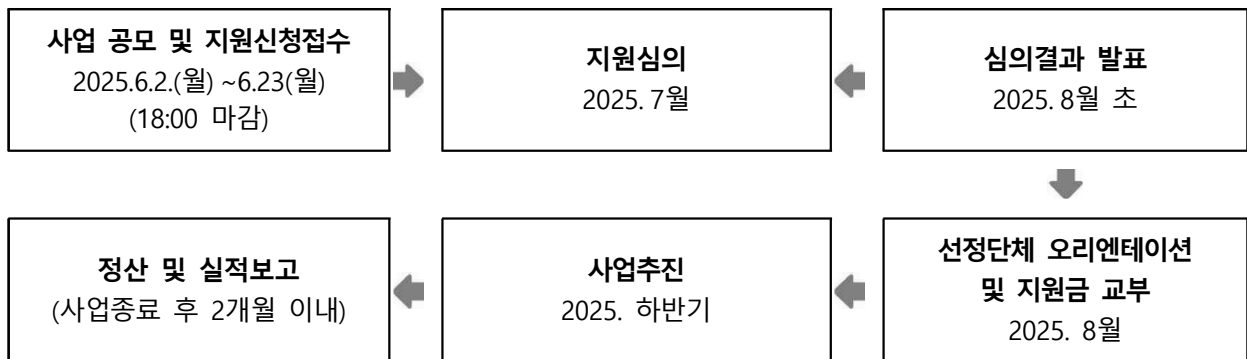
- 행정심의 결격사유 속지 : 타 사업에 지원신청(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분류 잘못 선택), 지원신청서 및 필수자료 미제출,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(타 사업의 지원신청서 양식 사용)
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'내 정보방'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,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(결과발표 시, 문자 안내 발송 예정)
- 지원신청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에서 성희롱·성폭력 예방에 관한 서약서 내용 확인 및 동의 체크 후 제출을 진행하여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단체자격 지원신청 시 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의 유효성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며, 휴·폐업 상태일 경우 지원신청이 불가능하기에, 유효한 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을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 문의는 1577-8751, 또는 자료실 > NCAS사용자 매뉴얼 확인

- 제출자료(필수 제출자료 총 6종)

제출자료	구분	제출방법
① 지원신청서	필수	공모안내문 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지정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받아 작성 후, 지원신청 제출 단계에서 '첨부파일' 면에 첨부 · 파일명 : 2025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_지원신청서_신청단체명 ※ 지정양식 사용, PDF 변환제출 지양
② 근로계약서	필수	신청단체와 정규직 고용전환 대상 인력(연수단원 참여이력)이 체결한 근로 계약서 사본 1부
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	필수	신청단체의 '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' 1부 (지원대상자, 신청단체 내 4대보험 가입 필수) ※ 2025년 6월 공고일 이후 발급자료 제출 ※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(www.4insure.or.kr)에서 발급 가능
④ 급여명세서	필수	고용전환 대상자의 2025년 상반기(1 ~ 6월) 급여명세서 사본 각 1부 ※ 대상인력별 해당되는 기간의 지급내역 전수 제출
⑤ 급여이체 증빙자료	필수	고용전환 대상자의 2025년 상반기(1 ~ 6월) 이체확인증 등(보내는이 / 받는이 / 이체일자 / 이체금액 등 세부내역이 명확히 확인되는 자료) ※ 대상인력별 해당되는 기간의 지급내역 전수 제출
⑥ 단체 증빙자료	필수	신청단체의 법적 성격(업종 등)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 -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록증, 고유번호증 중 해당 서류 제출

※ 제출자료 내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는 반드시 비공개 처리하여 주십시오(예시 : 901234-2*****)

7.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(안)



※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8. 문의처

○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재양성팀 02-760-4634 / ykkim@arko.or.kr

※ 문의시간 안내 : 평일 10:00~17:00(점심시간 제외)

* 지원시스템(NCAS) 이용 관련 문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문의처(1577-8751) 이용 바랍니다.

지원신청 유의사항

[공통사항]

- ▶ 문화예술진흥기금 **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과 사업 공고문 내용은 반드시 확인** 부탁드립니다.
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할 경우 신청자의 과실로 간주하여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,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.
- ▶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국고, 지자체, 유관 공공기관 등 공적 재원에서 동일 프로젝트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(지원대상 인력)의 경우 중복수혜 불가합니다. 중복수혜 사업은 '사업취소' 및 '보조금 환수'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 보기